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48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권향엽 · 김준혁 · 김남근
김 윤 · 김성희 · 전종덕
이광희 · 박 정 · 허성무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아,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지원 기능이 예산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배분·조정을 마련할 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

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제5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5항제3호의2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를 “정부출연연구기관의”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의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기술분야 <u>정부출연연구기관</u>, <u>「특정연구기관 육성법」</u>에 따른 <u>특정연구기관</u>, <u>「한국해 양과학기술원법」</u>에 따른 <u>한 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 관의</u>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u><후단 신설></u> <u><신 설></u> 4. ~ 9. (생략) ⑥ ~ ⑧ (생략)	<u>-----정부출연연구기관의-----</u> <u>-----</u> <u>-----</u>. 이 경우 <u>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u> <u>의견을 들어야 한다.</u> 3의3. <u>「특정연구기관 육성법」</u> <u>에 따른 특정연구기관</u>, <u>「한 국해양과학기술원법」</u>에 따른 <u>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u> 4. ~ 9.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	--